

약국의 세무실무

작성일자 : 2014 .08 .19

작성 자 : 김준효 세무사

I .개요

약국사업자는 의약품소매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

II .약국의 기초세무

1. 업종코드

523111 (의약품 , 의료용기구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각종약품류(한약 및 한약제제 제외)

-공중위생약품(가정용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등)

-의료보험에 의한 약사의 의약품 조제수입 및 일반조제수입 포함

단순경비율 : 83.5% , 기준경비율 : 6.0%

2. 중점사항

1) 조제수입 . 현금매출수입의 파악

2) 매입세액의 공제대상검토

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III . 부가가치세 실무

1. 과세유형

약사업, 한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된다.(법령 74②7)

2. 과세대상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조제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부령29). 그러나 의약품 소매 등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과세표준 등의 확정

수입금액은 과세분인 일반의약품 판매수입, 화장품 판매수입, 담배판매수입 등과 면세분인 조제수입으로 구성된다. 면세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함께 신고하면 된다. 개별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에 차이가 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서에 구분 기재 하여야 한다.

4.매입세액의 계산

약국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액, 지급 임차료, 비품구입, 소모품, 광고선전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접대비 등이다.

①조제매출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조제매출은 면세대상으로 이에 관련된 전문의약품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되며 불공제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원가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판매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 판매에 사용되는 의약품관련 매입세액은 과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 된다. 다만, 조제용역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야 한다.

③조제 및 매약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 중에서 조제에 사용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전액불공제하고 조제와 일반의약품판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④신용카드발행공제

일반의약품 판매 등 과세관련 매출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판매금액의 1.3%(연간 500만원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매 출		매 입	
조제수입(처방전)	면세	전문 의약품	불공제(의약품비)
일반 의약품	과세	일반 의약품	공제

IV.소득세 실무

1.기장의무

약사법에 의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문직사업자로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2.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약국사업자는 다음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세무서장 신고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등록[소득세법 제162조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사업개시와 동시에 신용카드가맹점은 등록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는 신규개업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개설을 하여야 한다.

4. 사업장현황신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는 해당사업연도 다음해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대부분의 약국사업자는 겸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5. 총수입금액의 확정

총수입금액은 조제매출(면세분), 일반매약매출, 담배매출, 화장품매출 등이며 매출 품목에 따른 소득율의 차이, 원가구성비율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구분표시 하여야 한다. 총수입금액에는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과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필요경비의 계산

약국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의약품 매입액, 임대료, 인건비, 이자비용, 전기료, 세금과공과 등이다. 총약제비는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소득(조제수가)과 약값으로 구성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분에 대한 지급시 지급액의 3.3% (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한다. 이는 원천징수세액으로 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 참고자료 :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이강오저)